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1)] <개정 2023. 6. 30.>
■ 地方税法施行規則[別紙第63号の3書式(1)] <改正2023年6月30日>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종교단체용] (갑)
土地分財産税合算除外申請書[郷校財団・宗教団体用] (甲)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グレーの欄は、申請人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裏面の作成方法をご確認の上、記入してください。 (表面)

접수번호	접수일시	관리번호
受付番号	受付日時	管理番号

1. 신청인

1. 申請人

① 단체명 (대표자명) ① 団体名 (代表者名)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法人登録番号 (事業者登録番号)	
③ 주소 ③ 住所	④ 전화번호 ④ 電話番号 ⑤ 전자우편주소 ⑤ 電子メールアドレス	

2.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2. 課税対象物件明細書

⑥ 번호 ⑥ 番号	⑦ 과세대상 소재지 ⑦ 課税対象の所在地	⑧ 지목 ⑧ 地目	⑨ 면적 ⑨ 面積	⑩ 개별종교단체명 (대표자명) ⑩ 個別の宗教団体名 (代表者名)	⑪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法人(住民)登録番号 (事業者登録番号)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合算除外決定の 通知方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 直接交付[] 書留郵便[] 電子メール []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됨을 확인했습니다.

私は、この申請書の留意事項等を十分に理解し、申請人が記入した内容と事実が相違する場合は財産税等の過少納付税額が追徴され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地方税法施行令」第116条の4に基づき、上記のとおり土地分財産税合算除外申請書を提出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市長・郡守・区庁長殿

첨부서류 添付書類	1.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합니다) 1부 1. 郷校財団又は宗教団体の定款（定款が変更された場合は「民法」第45条第3項に基づく郷校財団又は宗教団体に係る主務官庁の定款変更許可書を含む） 1部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2. 郷校財団又は宗教団体の理事会の議事録 1部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対象となる土地の事実上の所有者が個別の郷校又は所属している宗教団体であることを証明できる書類 1部	수수료 없음 手数料なし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作成方法

※ 이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2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 この書式は「地方税法施行令」第116条の4第2項に基づく郷校財団又は宗教団体が記入してください。

1. 신청인란

1. 申請人欄

- ① **단체명(대표자명)**: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① **団体名(代表者名)**: 郷校財団又は宗教団体の団体名と団体の代表者氏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②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② **法人登録番号(事業者登録番号)**: 団体名に該当する法人登録番号又は「所得税法」「法人税法」「付加価値税法」等に基づいて登録された事業場ごとの事業者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 ③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③ **住所**: 法人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を、個人事業者は主たる事業場の所在地を記入してください。
但し、主たる事務所又は主たる事業場の所在地と事務所の分所又は当該事業場の所在地が異なる場合は、事務所の分所又は当該事業場の所在地を記入することができます。
-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④ **電話番号**: 連絡可能な固定電話又は携帯電話の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 記載や計算の誤り等により、課税機関から連絡が必要な場合に使用します。
-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⑤ **電子メールアドレス**: 受信可能な電子メールアドレス(E-mail)を記入してください。

2.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란

2. 課税対象の物件明細書欄

- ⑥ **번호**: 신청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연번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⑥ **番号**: 申請する課税対象物件の連番を順に記入してください。
- ⑦ **과세대상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 ⑦ **課税対象の所在地**: 当該不動産の地番表記住所を記入してください。
- ⑧ **지목**: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을 적습니다.
- ⑧ **地目**: 当該不動産の公簿上の地目を記入してください。
- ⑨ **면적**: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면적을 적습니다.
- ⑨ **面積**: 当該不動産の公簿上の面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⑩ **개별종교단체명(대표자명)**: 합산배제를 희망하는 개별종교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⑩ **個別の宗教団体名(代表者名)**: 合算除外を希望する個別の宗教団体名と団体の代表者氏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⑪ **법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개별종교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 종교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⑪ **법인 (住民) 登録番号 (事業者登録番号)** : 個別の宗教団体名に該当する法人登録番号又は「所得税法」「法人税法」「付加価値税法」等に基づいて登録された事業場ごとの事業者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登録番号がない場合は宗教団体の代表者の住民登録番号を記入するものとし、韓国籍の者は住民登録番号を、外国籍の者は外国人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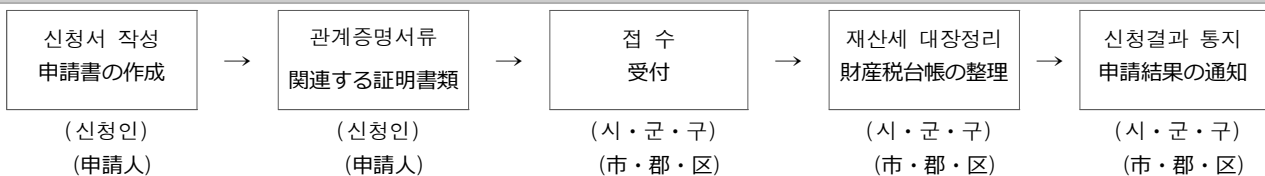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お問い合わせは 市(郡・区) 課(☎ -)までお願いします。

유 의 사 항 留意事項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합산배제 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申請人が記入・記載した合算除外申請書は「地方税基本法」第78条に基づき、真実であると推定されます。
-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後に申請人が記入・記載した内容が事実と相違すると判明した場合は、財産税等の過少納付の税額が追徴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合算除外決定の通知方法: 直接交付、書留郵便、電子メールのいずれかを選んでください。

처 리 절 차 処理の流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종교단체용] (을)
土地分財産税合算除外申請書[郷校財団・宗教団体用] (乙)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課税対象物件明細書

⑥ 번호 ⑥ 番号	⑦ 과세대상 소재지 ⑦ 課税対象の所在地	⑧ 지목 ⑧ 地目	⑨ 면적 ⑨ 面積	⑩ 개별종교단체명 (대표자명) ⑩ 個別の宗教団体名 (代表者名)	⑪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法人(住民)登録番号 (事業者登録番号)

※ 이 서식은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종교단체용] (갑)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この書式は、土地分財産税合算除外申請書 [郷校財団・宗教団体用] (甲) の課税対象物件明細書欄が足りない場合に使用してください。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 (갑)
土地分財産税合算除外申請書[個別団体用] (甲)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グレーの欄は、申請人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裏面の作成方法をご確認の上、記入してください。 (表面)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시 受付日時	관리번호 管理番号
--------------	--------------	--------------

1. 신청인

1. 申請人

① 단체명 (대표자명) ① 団体名 (代表者名)		②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法人(住民)登録番号 (事業者登録番号)	
③ 주소 ③ 住所		④ 전화번호 ④ 電話番号	
		⑤ 전자우편주소 ⑤ 電子メールアドレス	

2.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향교재단·종교단체)

2. 登記事項証明書上の所有者(郷校財団・宗教団体)

⑥ 단체명 ⑥ 団体名		⑦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⑦ 法人登録番号 (事業者登録番号)	
⑧ 주소 ⑧ 住所		⑨ 전화번호 ⑨ 電話番号	
		⑩ 전자우편주소 ⑩ 電子メールアドレス	

3.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3. 課税対象物件明細書

⑪ 번 호 ⑪ 番号	⑫ 과 세 대 상 소 재 지 ⑫ 課税対象の所在地	⑬ 지 목 ⑬ 地目	⑭ 면 적 ⑭ 面積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合算除外決定の 通知方法	직접 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 直接交付[] 書留郵便[] 電子メール []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됨을 확인했습니다.

私は、この申請書の留意事項等を十分に理解し、申請人が記入した内容と事実が相違する場合は財産税等の過少納付税額が追徴され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地方税法施行令」第116条の4に基づき、上記のとおり土地分財産税合算除外申請書を提出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 (署名又は印)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市長・郡守・区庁長 殿

첨부서류 添付書類	1.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합니다) 1부 1. 郷校財団又は宗教団体の定款（定款が変更された場合は「民法」第45条第3項に基づく郷校財団又は宗教団体に係る主務官庁の定款変更許可書を含む） 1部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2. 郷校財団又は宗教団体の理事会の議事録 1部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対象となる土地の事実上の所有者が個別の郷校又は所属している宗教団体であることを証明できる書類 1部	수수료 없음 手数料なし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作成方法

※ 이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この書式は「地方税法 施行令」第116条の4第1項に基づく郷校又は個別の宗教団体が記入してください。

1. 신청인란

1. 申請人欄

- ① **단체명(대표자명)**: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의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① **団体名(代表者名)**: 個別の郷校又は宗教団体の団体名と団体の代表者氏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② **법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② **法人(住民)登録番号(事業者登録番号)**: 団体名に該当する法人登録番号又は「所得税法」「法人税法」「付加価値税法」等に基づいて登録された事業場ごとの事業者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登録番号がない場合は団体の代表者の住民登録番号を記入するものとし、韓国籍の者は住民登録番号を、外国籍の者は外国人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 ③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③ **住所**: 法人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を、個人事業者は主たる事業場の所在地を記入してください。但し、主たる事務所又は主たる事業場の所在地と事務所の分所又は当該事業場の所在地が異なる場合は、事務所の分所又は当該事業場の所在地を記入することができます。
-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④ **電話番号**: 連絡可能な固定電話又は携帯電話の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 記載や計算の誤り等により、課税機関から連絡が必要な場合に使用します。
-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⑤ **電子メールアドレス**: 受信可能な電子メールアドレス(E-mail)을記入してください。

2.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란

2. 登記事項証明書上の所有者欄

- ⑥ **단체명**: 과세대상의 공부상 소유자인 단체의 단체명을 적습니다.
- ⑥ **団体名**: 課税対象の公簿上の所有者である団体の団体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⑦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⑦ **法人登録番号(事業者登録番号)**: 団体名に該当する法人登録番号又は「所得税法」「法人税法」「付加価値税法」等に基づいて登録された事業場ごとの事業者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 ⑧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⑧ **住所**: 法人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を、個人事業者は主たる事業場の所在地を記入してください。但し、主たる事務所又は主たる事業場の所在地と事務所の分所又は当該事業場の所在地が異なる場合は、事務所の分所又は当該事業場の所在地를記入することができます。

- ⑨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⑨ **電話番号**: 連絡可能な固定電話又は携帯電話の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 記載や計算の誤り等により、課税機関から連絡が必要な場合に使用します。
- ⑩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⑩ **電子メールアドレス**: 受信可能な電子メールアドレス (E-mail) を記入してください。

3.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란

3. 課税対象の物件明細書欄

- ⑪ **번호**: 신청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연번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⑪ **番号**: 申請する課税対象物件の連番を順に記入してください。
- ⑫ **과세대상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 ⑫ **課税対象の所在地**: 当該不動産の地番表記住所を記入してください。
- ⑬ **지목**: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을 적습니다.
- ⑬ **地目**: 当該不動産の公簿上の地目を記入してください。
- ⑭ **면적**: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면적을 적습니다.
- ⑭ **面積**: 当該不動産の公簿上の面積を記入してくだ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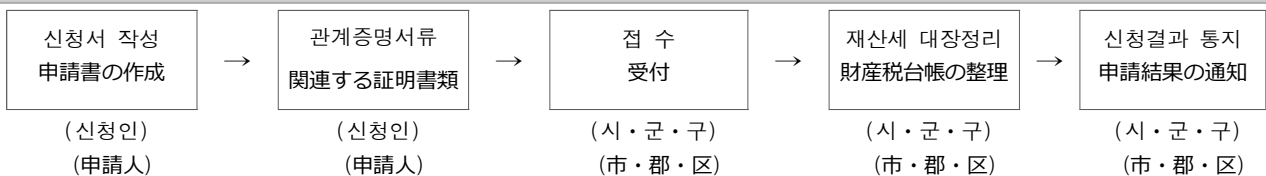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お問い合わせは 市(郡・区) 課(☎ -)までお願いします。

유의사항 留意事項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합산배제 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申請人が記入・記載した合算除外申請書は「地方税基本法」第78条に基づき、真実であると推定されます。
-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後に申請人が記入・記載した内容が事実と相違すると判明した場合は、財産税等の過少納付の税額が追徴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合算除外決定の通知方法: 直接交付、書留郵便、電子メールのいずれかを選んでください。

처리절차 処理の流れ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4)]
■ 地方税法施行規則[別紙第63号の3書式 (4)]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 (을)
土地分財産税合算除外申請書[個別団体用] (乙)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課税対象物件明細書

⑪ 번호 ⑪ 番号	⑫ 과세대상 소재지 ⑫ 課税対象の所在地	⑬ 지목 ⑬ 地目	⑭ 면적 ⑭ 面積

※ 이 서식은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갑)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この書式は、土地分財産税合算除外申請書 [個別団体用] (甲) の課税対象物件明細書欄が足りない場合に使用してください。